

제340회 임시회
2015. 6. 18.(목)

심 사 보 고 서

○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5. 6. 18.(목)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5년 6월 1일

다. 회부일자 : 2015년 6월 1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6월 10일

-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조윤희)

가. 제안이유

○ 기구신설 및 증원 등에 따른 부족한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도청을 찾는 민원인의 부족한 주차면수 해소를 위해 지난 2월 학교 이전으로 현재 폐교된 구(舊)중앙초 부지 및 건물을 교육청에서 무상사용 중인 구(舊)충북체고 부지와 교환하고

- 고부가가치 양식어종 연구와 새로운 양식기술 개발·보급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해양수산부에 친환경양식분야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최종 선정('15. 4)되었음. 이에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여 내수면연구소 부지 내에 쏘가리 대량시설 연구시설을 신축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구(舊)중앙초 부지 및 건물 교환취득》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4번지
- 취득시기 : 2015. 7. ~ 2016. 6.
- 취득규모 : 토지 13,525.7㎡, 건물 5,748.48㎡
- 재산가액 : 12,200백만원(토지 10,800, 건물 1,400)*추정감정가
- 취득사유 : 부족한 청사공간 및 주차부지 확보

《쏘가리 대량생산 연구시설 신축》

- 위 치 : 충주시 용탄동 118-1
- 사업기간 : 2015. 7. ~ 2016. 12.
- 사 업 량 : 쏘가리 대량생산 연구시설 1동(지상1층, 건축면적 1,200㎡)
- 사 업 비 : 2,000백만원 (국비50%, 도비50%)

□ 재산의 처분

《구(舊)충북체고 부지 교환처분》

-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808-4번지
- 처분시기 : 2015. 7. ~ 2016. 6.
- 처분규모 : 토지 7,613m²
- 재산가액 : 3,800백만원 *추정감정가
- 처분사유 : 도 교육청 소유의 구(舊)중앙초와 교환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한철우)

- 금번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교육청 소유의 구(舊)중앙초 부지와 충청북도 소유의 구(舊)충북체고 부지를 교환하는 것과, 내수면연구소에 사업비 2,0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자하여 쏘가리 대량생산 연구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임.
사안별로 검토를 하면,
- 구(舊) 중앙초 부지는 도청과 인접하여 부족한 업무공간 확보와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위해 충청북도에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그러나 그동안 언론을 통해 논의되었던 도의회 청사신축 등을 포함한 구(舊)중앙초 부지의 구체적인 활용계획과 교육청 소유의 구(舊)중앙초 부지와 충청북도 소유의 구(舊)충북체고 부지의 추정감정가가 차이가 8,400백만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남한강에 주로 서식하는 쏘가리는 고급 어종임에도 그동안 완전 양식이 불가능하였음.

전국 생산량은 연간 140t이며, 그 중 중복이 54%(76t)를 차지하고 있음.

2012년 쏘가리 완전 양식 연구에 착수한 내수면연구소는 강릉 원주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전용 사료 개발을 완료했고 2014년 쏘가리 식용어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음. 향후 쏘가리 대량생산을 통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리라 전망하며 금번 연구시설 신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 172 호

제출연월일 : 2015년 6월 1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기구신설 및 증원 등에 따른 부족한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도청을 찾는 민원인의 부족한 주차면수 해소를 위해 지난 2월 학교이전으로 현재 폐교된 구)중앙초 부지 및 건물을 교육청에서 무상사용 중인 구)충북체고 부지와 교환하고
- 고부가가치 양식어종 연구와 새로운 양식기술 개발·보급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해양수산부의 친환경양식분야 공모 사업을 신청하여 최종 선정('15.4.8)되어 국비 10억원을 확보하고 내수면연구소 부지내에 쏘가리 대량생산 연구시설을 신축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구)중앙초 부지 및 건물 교환취득》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4번지
- 취득시기 : 2015. 7. ~ 2016. 6.
- 취득규모 : 토지 13,525.7㎡, 건물 5,748.48㎡
- 재산가액 : 12,200백만원(토지 10,800, 건물 1,400) *추정감정가
- 취득사유 : 부족한 청사공간 및 주차부지 확보

《쏘가리 대량생산 연구시설 신축》

- 위 치 : 충주시 용탄동 118-1
- 사업기간 : 2015. 7. ~ 2016. 12.
- 사업량 : 쏘가리 대량생산 연구시설 1동(지상1층, 건축면적 1,200㎡)
- 사업비 : 2,00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재산의 처분

《구)충북체고 부지 교환처분》

-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808-4번지
- 처분시기 : 2015. 7. ~ 2016. 6.
- 처분규모 : 토지 7,613㎡(전체 11,857㎡ 중 64%)
- 재산가액 : 3,800백만원 *추정감정가
- 처분사유 : 도 교육청 소유의 구)중앙초와 교환

3.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공유재산관리계획

2015년도 관리계획총괄표(14-1)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건, m²,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 득	계	토지	1	63,391.5	9,913,163	1	13,525.7	10,800,000	2	76,917.2	20,713,163
		건물	2	12,400.0	30,000,000	2	6,948.4	3,400,000	4	19,348.4	33,400,000
		기타									
	매입	토지	1	63,391.5	9,913,163				1	63,391.5	9,913,163
		건물									
		기타									
	교환	토지				1	13,525.7	10,800,000	1	13,525.7	10,800,000
		건물				1	5,748.4	1,400,000	1	5,748.4	1,400,000
		기타									
기타	토지										
	건물	2	12,400.0	30,000,000	1	1,200.0	2,000,000	3	13,600.0	32,000,000	
	기타										
처 분	계	토지	1	6,467.5	1,011,388	1	7,613.0	3,800,000	2	14,080.5	4,811,388
		건물									
		기타									
	매각	토지	1	6,467.5	1,011,388				1	6,467.5	1,011,388
		건물									
		기타									
	양여	토지									
		건물									
		기타									
	교환	토지				1	7,613.0	3,800,000	1	7,613.0	3,800,000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201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건물	1건	1,200	2,000,000				
	기타							
1	토지							
	건물	충주시 용탄동 118-1	1,200	2,000,000	2018.8	쏘가리 대량생산 연구시설 건립	-	신축
	기타							
2	토지		이	하	여	백		
	건물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5	토지							
	건물							
	기타							

2015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14-3)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교환대상 면 적	추 정 가 액	교환 시기	교 환 사 유	교 환 대상자	비고	
	구분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 지	취득		1건	13,525.7	13,525.7	10,800,000				
		처분		1건	7,613.0	7,613.0	3,800,000				
	건 물	취득		1건	5,748.4	5,748.4	1,400,000				
		처분									
	기 타	취득									
		처분									
	1	취득	학교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4	13,525.7(토지), 5,748.4(건물)	13,525.7(토지), 5,748.4(건물)	12,200,000	'15.7 ~'16.6	공유재산 활용도제고	충청북도 교 육 감	
		처분	체육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808-4	7,613(토지)	7,613(토지)	3,800,000	'15.7 ~'16.6	"	충청북도	
2	취득			이	하	여	백				
	처분										
3	취득										
	처분										

관계 법령 발 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p> <p style="margin-left: 20px;">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 style="margin-left: 20px;">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p> <p style="margin-left: 20px;">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p> <p style="margin-left: 20px;">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p>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